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대 관 규 약

대 관 규 약

■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약은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이하 "놀유니버스")가 운영하는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과 그 부대 시설의 운영 관리 및 대관에 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전시, 연습, 녹음, 녹화 등(이하 "공연 등")을 위하여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의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자"라 함은 본 규약에 동의하여 놀유니버스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③ "공연장"이라 함은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로 대관의 대상이 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 ④ "하우스티켓"이라 함은 이중 예매 등 티켓판매사고 또는 각종 긴급 이슈 사항에 대비하여 대관자가 놀유니버스에 제공하는 공연 등의 비매품 티켓을 말한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시기,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상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신청시기에 따른 구분

- 가. 정기대관이란, 매년 차기 연도 개시 전 놀유니버스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확정되는 대관을 의미한다. 단, 차기 연도 외의 대관 또한 신청할 수 있으나 그의 승인·확정은 놀유니버스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 나. 수시대관이란, 정기대관 등과 같이 당해 연도 확정된 일정을 제외한 대관 가능한 잔여 일정 발생 시 놀유니버스가 별도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승인·확정되는 대관을 의미한다.

2. 대관 목적에 따른 구분

가. 공연대관이란, 실제 공연 등의 진행을 위한 공연장의 대관을 의미한다.

나. 준비대관 등이란, 공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공연장에 필요한 무대·장비 설치 등을 위한 준비 대관, 공연 등의 종료 후 공연장을 원상복구 하기 위한 철수 대관과 대관 준비 및 철수 시 철야 작업 수행에 따른 철야대관 등을 의미한다.

■ 대관신청 및 승인

제 4 조 대관신청 및 대관 신청 제한

- ① 대관신청인은 대관 신청 시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② 놀유니버스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 대관신청인의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 등을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2. 공연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연장의 관리 유지 상 부적절한 공연 등을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3. 이전 대관 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를 했거나 또는 공연 등의 변경을 2회 이상 한 법인 또는 개인
 4. 이전 대관 계약 시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한 이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5.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 등을 진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6. 기타 공연 등의 내용, 수준이 공연장에서 수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개인
 7.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제 5 조 대관승인

- ① 놀유니버스는 대관신청 접수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대관승인서, 대관불가통지서 등의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놀유니버스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신청인과 대관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유선으로 통보 받은 일자 혹은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놀유니버스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④ 대관자는 놀유니버스가 요구하는 준비대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⑤ 대관자는 대관 계약 체결 후 공연 등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있거나 대관 일정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 부대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놀유니버스에 제출해야 한다.

■ 대 관 료

제 6 조 대관료 산정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의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는 놀유니버스의 대관료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제 7 조 대관료 납부

-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총 대관료의 30%를, 공연시작 60일전까지 나머지 잔금을 놀유니버스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 총 대관료의 100%를 대관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 ② 부대설비사용료는 입장권 발행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만일 대관자가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대관자는 그러한 사정을 놀유니버스에 공유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최소한 공연 등 1일 전까지 대관자는 부대설비사용료의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 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가 있을 경우 추가 대관료의 발생 시점이 최초 대관 시작일 이전이라면 발생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이 시작된 이후 추가 발생한 대관료는 공연 등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 등 대관자가 대관계약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대금을 미납했을 경우 놀유니버스는 대관자와 별도 체결한 티켓판매대행계약 등에 따라 놀유니버스가 대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산대금채무에서 미납분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고, 대관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 ⑤ 대관자가 공연장 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놀유니버스는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대관료를 청구하고 대관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⑥ 놀유니버스와 대관자의 공동기획공연 또는 24회 이상의 장기 대관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 8 조 대관료 반환

공연 등의 취소, 변경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놀유니버스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 100% 반환
2. 놀유니버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 100% 반환
3. 부대설비사용신청 후 사용 7일 전 취소한 경우
 - 부대설비사용료 100% 반환

■ 취소, 변경금지 등

제 9 조 대관승인취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있을 시 놀유니버스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만일 이로 인하여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놀유니버스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놀유니버스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놀유니버스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놀유니버스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국가기관(공공기관)의 행정지도, 권고, 감사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7.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10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놀유니버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1 조 대관취소

대관계약 후 또는 공연기간 중 대관자가 대관 일정의 일부 혹은 전부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기납부 완료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2 조 공연 등 내용의 임의 변경금지 및 공연 등의 취소·중지

- ① 대관자는 대관 신청 시 명시한 내용 (작품명, 작품일정, 출연자, 작품내용, 주최자, 작품 가격 등)에 따라 대관을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놀유니버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등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공연 등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공연 등의 교환과 환불 등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천재지변으로 공연 등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놀유니버스는 본 규약 제8조에 따라 취소된 공연 등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 공연장 사용 및 의무사항

제 13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놀유니버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② 대관자가 전항에 따라 반입 설치한 설비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놀유니버스는 대관자에게 철거할 것을 최고 후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단, 놀유니버스가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놀유니버스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③ 대관자는 놀유니버스의 시설물 철거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놀유니버스의 철거 요청 통지로부터 3일 이내 즉시 철거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무대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등의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되, 특히 공연장에 반입되는 무대장치나 장치물에 대하여는 방염을 하여야 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놀유니버스의 요청이 있을 시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놀유니버스에 제출하여야 하며, 놀유니버스가 필증 등을 확인한 후에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놀유니버스는 공연 등 진행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대관자는 놀유니버스에서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⑥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 파손 시 놀유니버스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⑦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 공연 등의 종료 시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철거비용 및 환경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⑧ 놀유니버스는 대관기간 중(준비대관 및 철수대관 포함) 공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⑨ 대관자는 놀유니버스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놀유니버스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⑩ 공연 등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은 놀유니버스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사용료를 납부한다.

- ⑪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놀유니버스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5 조 안전관리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놀유니버스의 안전에 관한 권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인명, 재산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놀유니버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놀유니버스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6 조 입장제한

놀유니버스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에게 구매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1. 타 구매자가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 또는 동물을 휴대한 자
- 4.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 5. 기타 안전 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6. 공연 등의 특성상 입장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미취학 아동

■ 입장권 발행, 판매 등

제 17 조 입장권 발행

- ① 대관자는 공연 등의 판매대행사인 놀유니버스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판매대행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놀유니버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공연장의 좌석은 총 1,134석(객석 1층 699석, 휠체어석 12석, OP 61석, 객석 2층 362석)으로 공연 등의 특성에 따라 일부 좌석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③ 놀유니버스는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 및 사용하며,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 총 10석: 1층 C열 12~15번, 1층 J열 21~26번
- ④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놀유니버스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된 입장권을 사용한 구매자에 대하여 놀유니버스는 공연장 입장을 제한, 거부할 수 있다.
- ⑤ 현장 매표소에서 좌석 표기 된 입장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좌석교환권은 반드시 놀유니버스의 사전 승인을 받고 놀유니버스의 전산으로 발권해야 한다.
- ⑥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시 놀유니버스 회원 및 관계사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8 조 입장권 판매 및 매표, 수표관리

- ① 대관자는 구매자의 편의와 원활한 티켓발권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장에 입점되어 있는 티켓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놀유니버스와 사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입장권 매표는 대관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놀유니버스에서 전담한다.

■ 홍보물, 방송 협의

제 19 조 광고 홍보물 협의

- ①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은 놀유니버스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공연장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할 경우 놀유니버스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시하며, 장소에 따라 게시료가 발생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 20 조 방송중계, 판촉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놀유니버스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대해서는 놀유니버스와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연 등의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놀유니버스는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 공연진행 등

제 21 조 공연진행협조

1. 스탭회의

가.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 등의 준비대관 시작일 최소 15일전까지 놀유니버스의 주관 하에 스탭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스탭회의에 따라 위 항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준비대관 시작 2일전까지 공연장 무대기술팀 및 운영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대관자는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놀유니버스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가.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 등의 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하는 기술 검토 후 놀유니버스의 관리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나. 공연 등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 진행에 관한 책임은 놀유니버스가 부담한다.

다. 백스테이지 출입은 놀유니버스에서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자만 가능하며,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 명단을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놀유니버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연 등의 진행

가. 공연 등의 당일 진행은 공연 등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공연 등 종료 마감까지를 말하며, 1회 공연은 18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일, 1회 공연이 180분을 초과할 경우 대관자는 1회 공연대관에 따른 비용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나. 대관자는 놀유니버스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 등의 진행 중 문제발

생 시 놀유니버스는 공연 등의 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 등을 중지할 수 있다.

다. 대관자는 공연 등의 개시일 전까지 놀유니버스가 요구하는 수량의 (공연 등 당 최소 30부) 포스터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 공연진행과 관련한 하우스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 등)은 놀유니버스의 하우스 매니저가 총괄 운영한다.

■ 부 칙

제 22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 ① 본 규약은 대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② 본 규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 공연 등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3 조 책임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놀유니버스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② 대관자는 놀유니버스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3자로부터 손배상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24 조 관할법원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르며, 만일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